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9
----------	-----

제출년월일 : 2012. 2. .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 및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안 별표2)
 - 기능직 공무원 비율 조정
 -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직급별 비율 조정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안 별표3)
 -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인원 조정 (일반직 증8)

3. 근거법규

-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 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11. 9. 30)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예산주무관 협의(비용추계서 첨부)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 다. 관련부처 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사항 : 2012. 1. 9 ~ 1. 29(의견없음)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47명”을 “555명”으로 한다.
별표2의 2. 기능직공무원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 ①(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9%이내	18%이내	24%이내	49%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55		-		
정무직	소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473		-		
	3급	1	1			
	4급	5	3	1	1	
	5급	36	19	2	3	13
	6급이하	431		-		
별정직	소계	2		-		
	6급 상당 이하	2		-		
기 능 직		79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47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p> <p>1. (생략)</p> <p>2. 기능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h>10급</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9%이내</td> <td>18%이내</td> <td>24%이내</td> <td>35%이내</td> <td>14%이상</td> </tr> </tbody> </table> <p>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국</th> <th>직속기관</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54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정무직</td> <td>소 계</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 rowspan="5">일반직</td> <td>소계</td> <td>465</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5</td> <td>3</td> <td>1</td> <td>1</td> </tr> <tr> <td>5급</td> <td>36</td> <td>19</td> <td>2</td> <td>3</td> </tr> <tr> <td>6급이하</td> <td>423</td> <td></td> <td>-</td> <td>13</td> </tr> <tr> <td rowspan="2">별정직</td> <td>소계</td> <td>2</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상당이하</td> <td>2</td> <td></td> <td>-</td> <td></td> </tr> <tr> <td>기능직</td> <td>79</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9%이내	18%이내	24%이내	35%이내	14%이상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총 계	547			-		정무직	소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465		-		3급	1	1			4급	5	3	1	1	5급	36	19	2	3	6급이하	423		-	13	별정직	소계	2		-		6급상당이하	2		-		기능직	79			-		<p>제2조(정원의 총수) ----- ----- 555-----.</p> <p>[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2. 기능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td> <td>-----</td> <td>-----</td> <td>49%이상</td> </tr> </tbody> </table> <p>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국</th> <th>직속기관</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55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정무직</td> <td>소 계</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 rowspan="5">일반직</td> <td>소계</td> <td>473</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5</td> <td>3</td> <td>1</td> <td>1</td> </tr> <tr> <td>5급</td> <td>36</td> <td>19</td> <td>2</td> <td>3</td> </tr> <tr> <td>6급이하</td> <td>431</td> <td></td> <td>-</td> <td>13</td> </tr> <tr> <td rowspan="2">별정직</td> <td>소계</td> <td>2</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상당이하</td> <td>2</td> <td></td> <td>-</td> <td></td> </tr> <tr> <td>기능직</td> <td>79</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	-----	-----	49%이상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총 계	555			-		정무직	소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473		-		3급	1	1			4급	5	3	1	1	5급	36	19	2	3	6급이하	431		-	13	별정직	소계	2		-		6급상당이하	2		-		기능직	79			-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9%이내	18%이내	24%이내	35%이내	14%이상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총 계	547			-																																																																																																																																																							
정무직	소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465		-																																																																																																																																																							
	3급	1	1																																																																																																																																																								
	4급	5	3	1	1																																																																																																																																																						
	5급	36	19	2	3																																																																																																																																																						
	6급이하	423		-	13																																																																																																																																																						
별정직	소계	2		-																																																																																																																																																							
	6급상당이하	2		-																																																																																																																																																							
기능직	79			-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	-----	-----	49%이상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총 계	555			-																																																																																																																																																							
정무직	소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473		-																																																																																																																																																							
	3급	1	1																																																																																																																																																								
	4급	5	3	1	1																																																																																																																																																						
	5급	36	19	2	3																																																																																																																																																						
	6급이하	431		-	13																																																																																																																																																						
별정직	소계	2		-																																																																																																																																																							
	6급상당이하	2		-																																																																																																																																																							
기능직	79			-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79)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02. 08 (수)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2. 02. 13(월)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2. 02. 16(목)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최영목 기획감사실장)

-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 및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2)
 - 기능직 공무원 비율 조정
 -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직급별 비율 조정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안 별표3)
 -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인원 조정 (일반직 증8)

5. 관련법규

-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 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11. 9. 30)

6. 검토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 본 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 및 정부방침에 의하여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기능직 공무원 10급은 폐지하는 대신 9급 비율을 현행 35%이내에서 49%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고
 - 사회복지직 8명 증원으로 정원을 조정 함
- 결 론
 - 본 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과 정부방침에 따라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현재 기능 10급 1명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 (2011. 9. 30)
-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5.23)에 따른 기능직10급 폐지

2. 비용추계의 전제

- '12년도 추경예산편성시 증원인력 인건비 반영
- 증원인건비 산출은 '12년 당초예산편성 기준으로 작성
- '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인력운용비 상승률 적용(5.1%)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총 비용	162	215	225	236	248	1,086	
세출	소 계	162	215	225	236	248	1,086
	인건비	162	215	225	236	248	1,086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국비	보조금	126	168	168	0	0	462
	특별보조금						
구비	36	47	57	236	248	624	
합 계	162	215	225	236	248	1,086	

1. 부대의견

- 해당없음

2.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은 예산주무관과 협의

3. 작성자

- 기획감사실 행정7급 김현옥(☎290-3060)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구분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국비	보조금	126	168	168	0	0	462
	특별보조금						
구 비		36	47	57	236	248	624
합 계		162	215	225	236	248	1,086

2. 재원조달방안

- 국비70% 지원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은 예산주무관과 협의

5. 작성자

- 기획감사실 행정7급 김현옥(☎290-3060)